

의안번호	2124820
의 퇴 인	변재일 의원
회 답 일	2023. 10. 19.
추계번호	23F3888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—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를 상향·일몰기한 삭제
및 영상콘텐츠 제작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

【비용추계서】

I. 비용추계 결과

-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상향하고 일몰기한을 삭제함에 따라 소득세 및 법인세는 2025년 1,452억원, 2029년 2,128억원 등 2025년에서 2029년까지 5년간 총 9,097억원(연평균 1,819억원) 감소할 것으로 추계
 - 해당 재정수입 변화는 추계가 곤란한 항목을 제외하고 일부에 대하여 추계한 것으로, 전체적인 재정수입 감소는 추계된 금액을 상회할 수 있음
 - 공제율 상향의 효과는 2025년부터 발생하며, 일몰기한 삭제의 효과는 현행 적용기한을 감안 시 2027년부터 발생함

[표 1]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: 소득세 및 법인세, 2025~2029년

(단위: 억원)

	2025	2026	2027	2028	2029	누적	연평균
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율 상향 및 일몰기한 삭제 (제25조의6 제1항)	-1,452	-1,513	-1,960	-2,042	-2,128	-9,097	-1,819

주: 향후 5년간의 세수효과를 추계한 결과로, 제시된 기간 이후에도 재정수입 감소가 발생할 수 있음

I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25조의6 제1항 (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율 상향 및 일몰기한 삭제)	○ 세액공제 대상 방송을 '교양 프로그램' 까지 확대 ○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공제율 확대 - (현행) 대기업 3%, 중견기업 7%, 중소기업 10% → (개정안) 대기업 20%, 중견기업 25%, 중소기업 30% ○ 일몰기한 삭제 - (현행) 2025년 12월 31일 → (개정안) 삭제	조세지출
2	안 제25조의6 제2항 (영상콘텐츠 제작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)	○ 영상콘텐츠 제작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 - (공제율) 대기업 20%, 중견기업 25%, 중소기업 30%	조세지출

Ⅲ.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

1.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추계여부	비고
1	안 제25조의6 제1항 (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 공제율 상향 및 일몰기한 삭제)	○	개정안은 공제대상 방송을 다큐멘터리에서 전체 교양 프로그램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나, 해당 분야의 구체적인 공제 대상 제작비 규모 등을 전망하기 어려워 동 추계에서는 제외
2	안 제25조의6 제2항 (영상콘텐츠 제작 투자에 대한 세액 공제 신설)	×	○ 「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」 제3호 －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 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 운 경우

2.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

-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공제율 상향에 대한 세수효과는 다음의 가정에
따라 추계
 -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율은 2023년 잠정실적을 기준으로
향후 2015~2019년 영상콘텐츠 제작비 연평균 증가율(4.2%)에 따라 증가할
것으로 가정
 - 세액공제율 상향의 세수효과는 앞선 전망치에 공제율 상향 효과를 비례적
으로 반영하여 추정
- 향후 영상콘텐츠 세액공제를 받는 업체에 충분한 이익이 발생하여 공제율
상향에 따라 증가하는 세액공제를 모두 감면받을 수 있다고 가정하며,
최저한세는 고려하지 않음
- 세액공제율 변화에 따른 행태변화는 고려하지 않음
 - 세액공제율 변화에 따라 영상콘텐츠 제작에 대한 행태가 달라질 가능성이
존재하지만, 동 추계에서는 이를 고려하지 않음

- 개정안이 2023년 말 통과될 경우 부칙에 따라 공포 후 6개월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지만 2024년 제작분부터 적용된다고 전제하며, 세수효과는 징수 기준에 따라 집계
 - 공제율 상향의 효과가 2024년 제작분부터 적용될 경우 세수효과는 2025년부터 발생하며, 일몰기한 삭제의 효과는 현행 적용기한(2025년 말)을 고려할 때 2026년 제작분부터 적용되어 2027년부터 발생

3.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

(1) 제도 개요 및 조세지출 실적

- (제도개요) 동 특례는 영상산업 지원을 위해 2017년 신설·도입
 - 대상 영상콘텐츠
 - 방송프로그램: 텔레비전으로 방송된 드라마, 애니메이션, 다큐멘터리, 오락프로그램
 - 영화: 영화상영관에서 7일 이상 연속하여 상연된 것(독립영화는 1일 이상)
 - OTT에서 방영되는 영상물(2023년부터 포함)
 - 2022년부터 국외에서 발생한 제작비도 공제에 포함
- (감면실적) 영상콘텐츠 제작비에 대한 세액공제 실적은 2018년 21억원에서 2022년 309억원으로 증가했으며, 2023년 감면액 잠정치는 325억원

[표 2]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실적: 2018~2023년

(단위: 억원)

	2018	2019	2020	2021	2022	2023p
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	21	69	99	170	309	325

주: p는 잠정치

자료: 정부의 「조세지출예산서」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

(2) 추계방법

- (영상콘텐츠 제작비 현황) 영상콘텐츠 제작비는 2015~2019년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추세를 보였으나, 2020~2021년에는 감소한 모습
 - 2020~2021년 영상콘텐츠 제작비의 감소는 코로나19 및 사회적 거리두기 등에 따라 관련 산업이 위축된 영향으로 판단

[표 3] 콘텐츠산업(영상) 제작비 현황: 2015~2021년

(단위: 억원)

	2015	2016	2017	2018	2019	2020	2021	'15~'19 연평균 증가율
영화	4,617	4,264	4,582	4,986	5,502	2,988	2,423	4.5
방송 ¹⁾	19,676	22,348	21,210	23,210	23,899	22,338	23,509	5.0
애니메이션	1,229	1,271	1,276	454	725	1,510	1,132	-12.4
계	25,521	27,883	27,068	28,649	30,126	26,836	27,063	4.2

주: 1) 지상파방송·방송채널사용사업·지상파DMB·종합유선·위성방송·위성DMB·IPTV 방송의 제작비
 자료: 영화산업진흥원 「한국영화산업 결산」, 방송통신위원회 「방송통계포털」, 문화체육관광부 「콘텐츠 산업 통계조사」를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

- (2023년 잠정실적 안분) 2023년 잠정치(325억원)를 국세청이 제출한 '20~'22년 기업규모별 실적 비중을 적용하여, 대 / 중견 / 중소기업 안분
 - 2020~2022년 기업규모별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액 비중의 평균
 - 대기업 53.8%, 중견기업 25.4%, 중소기업 20.0%

[표 4] 영상콘텐츠 세액공제액 기업규모별 안분: 2023년

(단위: 억원)

	대기업	중견기업	중소기업	계
공제액	175	82	68	325

자료: 정부의 「조세지출예산서」 및 국세청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

- 2023년 잠정실적을 기준으로 향후 공제액이 '15~'19년 영상콘텐츠 제작비 연평균 증가율(4.2%)에 따라 증가할 것이라는 가정 하에 전망한 후, 개정안의 공제율 상향효과를 반영하여 세수효과 산출
 - 세액공제율 상향: 대기업 3 → 20%, 중견기업: 7 → 25%, 중소기업: 10% → 35%

[표 5]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율 상향 등에 따른 공제액 변화: 2025~2029년
(단위: 억원)

		2025	2026	2027	2028	2029
현행 (A)	대기업(3%)	190	198	—	—	—
	중견기업(7%)	90	93	—	—	—
	중소기업(10%)	74	77	—	—	—
	계	353	368	— ¹⁾	—	—
개정안 (B)	대기업(20%)	1,265	1,318	1,373	1,431	1,491
	중견기업(25%)	320	333	347	362	377
	중소기업(30%)	221	230	240	250	260
	계	1,805	1,881	1,960	2,042	2,128
공제액 증가 (B-A)	대기업	1,075	1,120	1,373	1,431	1,491
	중견기업	230	240	347	362	377
	중소기업	147	153	240	250	260
	계	1,452	1,513	1,960	2,042	2,128

주: 1) 동 특례의 현행 적용기한(2025년 12월 31일)을 감안하면 추계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 작성

(3) 추계결과

-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상향하고 일몰기한을 삭제함에 따라 소득세 및 법인세는 2025년 1,452억원, 2029년 2,128억원 등 2025년에서 2029년까지 5년간 총 9,097억원(연평균 1,819억원) 감소할 것으로 추계
 - 공제율 상향의 효과는 2025년부터 발생하며, 일몰기한 삭제의 효과는 현행 적용기한을 감안 시 2027년부터 발생함

[표 6]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: 소득세 및 법인세, 2025~2029년

(단위: 억원)

	2025	2026	2027	2028	2029	누적	연평균
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 공제율 상향 및 일몰기한 삭제 (제25조의6 제1항)	-1,452	-1,513	-1,960	-2,042	-2,128	-9,097	-1,819

주: 향후 5년간의 세수효과를 추계한 결과로, 제시된 기간 이후에도 재정수입 감소가 발생할 수 있음

IV. 부대의견

□ 없음

V. 작성자

□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세제분석2과	이정훈	백경엽

□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이정훈	02-6788-4837	nororand@assembly.go.kr